

---

# 입 법 정 보

---

2017-1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                                                                |    |
|----------------------------------------------------------------|----|
|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 4  |
|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 4  |
| 3.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 4  |
| 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 5  |
|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 5  |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금융위원회) .....   | 7  |
| 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br>(국토교통부) .....   | 7  |
|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br>(국토교통부) .....    | 7  |
| 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 8  |
|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식품의약품 안전처) ..... | 8  |
| 1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 8  |
| 1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 9  |
| 1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 10 |
| 1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 10 |
| 1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 10 |
|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 11 |
| 17.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수산부) .....                   | 11 |
| 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br>.....        | 11 |
| 19.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 12 |
| 2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 12 |
| 2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 13 |
| 22.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 13 |

|                                                           |    |
|-----------------------------------------------------------|----|
| 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 13 |
| 2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 14 |
| 2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 14 |
| 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 14 |
| 27.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 15 |
| 28.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획재정부) .....         | 15 |
| 2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 16 |
| 3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br>.....  | 18 |
| 3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 19 |
| 32.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교육부) .....               | 20 |
| 3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1 |
| 3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 22 |
| 3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 23 |
| 36. 아동수당법 제정(안) (보건복지부) .....                             | 23 |
| 3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 25 |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 25 |
| 3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br>..... | 26 |
| 4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br>.....  | 27 |
| 4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 28 |
| 4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 29 |

##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8. 10.
-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에 대한 신설기구성과평가 결과로 통계서비스 정책관, 마이크로데이터과, 빅데이터통계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정원(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에 반영하며, 정부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과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능인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등 정원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8. 28.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의 확인유효기간,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시 재신청 제한기간, 그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확인서 발급, 서면 및 현장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안 제11조의2)
  -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2조제3항은 삭제하고, 관련사항을 신설 안 제11조의2 제6항으로 변경
-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3)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아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기한을 취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4)

## 3.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8. 27.

-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함)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회·자료제출·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4584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자료제출·출석요구 및 현장 조사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입제한 국가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9. 22.
-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9. 18.
- 카지노 산업은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을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외화획득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산업 분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 및 규제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지노업에도 전자테이블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함. 따라서 전자테이블게임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적정 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또한, 규제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범위, 게임기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자치부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여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한편,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에 전자테이블게임을 추가하고, 영업종류별로 유사한 종류를 묶어서 3가지 종류(테이블 게임·전자테이블 게임·머신 게임)로 구분함(안 별표 8)

나. 중복되거나 과도한 내용의 변경허가 대상을 완화하여 카지노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영업장 면적 변경, 게임기구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지
- 주전산기외의 전산시설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

다. ·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카지노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3조)

라.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 시킴(안 별표 23의 7호, 별지 제30호서식)

마.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8. 22.
-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하려는 것임.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 **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9.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을 조정(안 제10조 제1항)

##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7.                      • 마감일자 : 2017. 9.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 (안 제9조 제1항)
- 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금액을 조정(안 제9조 제2항)

## **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8. 8.                      • 마감일자 : 2017. 9. 18.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 중 인력 요건과 매출액 요건이 디자인분야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개혁장관회의(' 16.12.28.)에서 「창업기업 장벽규제 일괄효과」 과제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요건 완화를 통해 신생기업의 디자인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인력 및 매출액 기준을 완화함. (안 제9조)

##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8. 9.                      • 마감일자 : 2017. 9. 18.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8. 10.                      • 마감일자 : 2017. 9. 19.
-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정수기 ‘부가기기’ (정수기능 외의 기능을

내는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부가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정수기 관리제도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여, 정수기 위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1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10.
- 마감일자 : 2017. 9. 19.

-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이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징수정보”)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화하여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징수공무원의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 근거 신설, 체납·결손자료 제공 기준 정비,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추가 등 지방세외수입의 준조세적 성격을 고려한 징수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 지원체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가. 납부의무자 권리보호 강화

징수공무원이 취득한 징수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정보, 체납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제20조)

### 나.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강화

1)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23조)

2) 결손액과 체납금액을 합산하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족 중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안 제11조)

### 다.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22조의3)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제도

상의 불합리, 법령·조례 간 상충 등을 범부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를 도입함.

### **13.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0.      ● 마감일자 : 2017. 9. 19.
- 「아동복지법」 개정( '16.3.22.공포, '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0.      ● 마감일자 : 2017. 9. 19.
- 「아동복지법」 개정( '16.3.22.공포, '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10.      ● 마감일자 : 2017. 8. 23.
-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취득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9. 20.
-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근거 마련(4종·5종 사업장),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의 검사신청서식 일원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7.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9. 20.
- 심해저자원에 대한 정의와 기본계획, 심해저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지도감독규정, 해양환경보호의무 내용규정 등 향후 심해저자원개발사업이 상업화될 경우를 대비한 체계적 사업추진체계 마련과 국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해저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인류공동의 이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9.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보완하려는
- 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안 제6조의2제4항)

- 나. 세입·세출 계정표 신설 및 기존 계정표 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규칙 별표 4, 안 별표 9 및 별표 10)
- 다. 장기요양기관용 임·직원 보수일람표 서식을 규정(안 제11조제2항단서, 제20조제2항단서, 별지제 4호의2서식)
- 라.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비치서류 중 현금출납부(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총계정원장(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을 매년 7월 1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규정(안 제24조제2항)
- 마.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비율을 준수토록 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단서, 제16조제2항)

## 19.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9. 20.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5조 별표1 개정)
  - 산업성 평점을 최고 5점으로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통성 또는 우수성 평점을 최고 30점에서 25점으로 조정
  - 기타 가·감점 부분에 윤리성 가점을 3점 추가
- 나. 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는 사항 신설(안 제7조)
  - 해당식품의 산업성 및 신청자의 윤리성,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조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 2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9. 20.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8. 16.
-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상향조정된 직급 정비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복수직급(4.5급) 과장직위를 조정하고자 함

## **22.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9. 31.
- 합동군사대학교 임무 중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고, 합동 교육·교리 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분리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교육부와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발전부를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 예하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8. 11.      • 마감일자 : 2017. 8. 16.
-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중심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숙련 청년 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일학습병행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8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24. 재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9. 25.
-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호기관(시·도, 시·군·구)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재난심리회복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①)
-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②)
- 다.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의6 ③)

## 2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9. 4.
-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및 해양환경평가체계구축, 해양공간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신규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해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9. 4.

-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를 위한 정도관리 기준 수립방법, 정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환경종합 조사기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기준·방법 등에 대해 규정

## 27.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8. 24.
-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 법률제14837호, 2017.7.26. 시행)으로 종전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상의 관련조항을 변경 코자 함

## 28.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8. 16.
- 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1) 북방경제협력 정책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정책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 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북방 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안 제8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북방경제협력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되도록 함.

## 2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9. 25.

○ 가.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원을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최소 인원 구성요건을 마련하여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 심의를 예방하고자 함

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공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다.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라. 건설사업관리를 기본설계까지 확대하고,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을 일원화함으로써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하여 발

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함  
다. 건설신기술의 설계 반영 후 실제 시공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  
므로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  
기간을 3년 확대(5년 → 8년 범위내) 하고자 함

○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안 제9조제2항, 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제5항)

- 1)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분야별 평가전문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할 필요
- 2)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 에서 “150  
명 이내” 로 조정하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명 이내” 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 로 조정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요건(안 별표2)

- 1)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이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연구원 및 교수에 한정되어 있고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므로,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시 주로 포함되는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  
마련 필요
- 2)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에 “건설기술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  
령 이상 군인” 조항 신설

다. 중앙설계심의분과 위원 활용 확대(안 제18조제5항)

- 1) 필요한 경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가능하도  
록 근거 규정 마련

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안 제35조 제1항)

- 1)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당초 5년  
범위내에서 8년 범위내로 3년 확대

마.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 대상 축소(안 제43조 제1항)

- 1) 건설기술자 교육대상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중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자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의무화(안 제55조제3  
항 개정)

1) 공중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해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발주토록 개선

사.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사업 확대 등(안 제55조제1항, 안 제57조,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의 경우 기본설계 시에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전문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중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 등을 추가하는 등 체계화

3) 설계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을 일원화하여,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

아.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화(안 제98조제2항 개정)

1)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결과 통보 기한 규정(안 제98조제3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해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기한을 20일로 일괄 규정

차. 안전관리계획 심사 시외부전문기관 검토 의뢰 의무화(안 제98조제4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 **3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8. 14.      • 마감일자 : 2017. 8. 21.

- 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 한시 정원 증원 및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조정(안 제9조의2, 제11조, 제1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5 개정)
  - 대기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한시조직인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으로 지주회사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공시점검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
  -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 나.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한시정원 증원(안 제9조, 제17조, 제19조, 별표 5 개정)
  - 디지털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하여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신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을 증원
  -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동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 다.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개정)
  - 정부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중 정부3.0 기능을 정부혁신 기능으로 조정

### 3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6.                      • 마감일자 : 2017. 8. 21.

- 가. 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제6조제2항 개정)

1)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두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보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나. 정부위원 규모 축소(안 제5조제1항 개정)

1)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개편을 위해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7개로 축소함.

다. 독립 사무처의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1) 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지원단을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의 사무처로 개편함.

2) 사무처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함

## **32.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8. 16.      • 마감일자 : 2017. 8. 23.

○ 가.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국가의 주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점검과 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사항,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상정된 의안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유 초 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로 구성된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교육문화 정책 담당 비서관과 상근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 3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8. 16.                      • 마감일자 : 2017. 9. 28.

○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설계에 반영되는 기술기준을 구체적 명시(안 제5조제1의2호, 제4호)

- 개별 법령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명시함

나. 근거리 소규모 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1조제3항제1호)

-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현장 간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에게 2 이상의 공사의 감리를 허용함

다. 총공사비가 10%미만 변경 시 감리원 등급의 배치기준 완화(안 제11조제5항 신설)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비의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지속적으로 감리 수행을 허용함

라. 경미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적용(안 제25조제6호 신설)

- 공사제한의 예외 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 적용대상 공사에서 제외시킴

마.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신고의 간소화 등(안 제28조제2항)

- 공사실적신고시 각종 공사실적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적용대

상을 도급금액이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완화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결산서 제출서류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로 갈음함

바. 공사의 부분사용전검사 제도 도입 등(안 제36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 전체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허용하고, 사용 전 검사 보완지시를 민원처리기한 이내에 완료한 때에는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처리하여 사업자 편익을 도모함

사. 감리원 자격에 경력자 등의 중급감리원 등급 도입(안 별표2)  
-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의 감리원 자격에 중급감리원 등급을 도입하여 현장 경험과 경력의 전문기술 활용을 제고함

아. 시공능력의 평가에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을 반영(안 별표4)  
- 기술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 기술력평가액의 산정 시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자. 경력자 등의 중급감리원 및 중급기술자 등급 도입에 따른 인정교육 실시기준 반영(안 별표5)  
- 경력자 등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등급 상향을 하는 경우,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20시간) 과정을 이수함

차.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경력자 등의 중급기술자 등급 도입(안 별표6)  
-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중급기술자 등급을 도입하여 현장 경험과 경력의 전문기술 활용을 제고함

### **3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17.                      • 마감일자 : 2017. 9. 26.

○ 가.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시달”을 “통보”로 수정

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민방위대 편성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29조제

1호~제3호 삭제)

직장대원 신분취득·상실에 따른 신고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제

다. 교육훈련 면제신청 증명서류 발급기관장 확대(안 제37조제1항제1호)

재소증명 발급기관장을 현실에 맞게 교도소장 외에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으로 변경

### **3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17.                      • 마감일자 : 2017. 9. 26.

○ 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인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6항 삭제)

1) 본인에게 직접 전달방법에서 등기우편, 전자문서 전달방법을 추가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2) 민방위기본법으로 규정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전달조항 삭제

나. 교육훈련 통지기한(교육훈련일 7일전)을 모든 통지방법에 적용(안 제30조제2항)

통지서를 교육훈련 7일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

다. 대원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 근거 마련(안 제30조제7항 신설)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36. 아동수당법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7.                      • 마감일자 : 2017. 9. 4.

○ 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신청 (안 제2조, 제4조, 제6조)

1) 아동을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만 6세 미만(6세 생일 전월)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 (안 제2조 제2호, 안 제4조 제1항)

- 2)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아동의 보호자로 규정함(안 제2조 제4호)
- 3)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대리인이 지자체장에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제1항)

#### 나. 아동수당의 지급 (안 제10조)

- 1)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 2) 아동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 3)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이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5항)

#### 다.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 부칙 제3조)

- 1)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안 제12조).
- 2) 법 시행 당시 이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법 시행 전 출국일 기준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함 (부칙 제3조)
- 3) 보호자의 아동학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4)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 중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되거나 중복지급된 경우에는 아동수당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라.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권리 보호 (안 제18조, 제19조)

- 1)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

으며,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8조)

2) 아동수당 지급 결정이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에  
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3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8. 3.                      • 마감일자 : 2017. 8. 10.

○ 기획재정부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출·소득분배·저출산·고령화 및 의료·주거·교육복지 등 경제현안을 관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출구조 조정, 참여예산제도 등의 업무를 추가로 관장하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현행 세제실·대외경제국·공공정책국 등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조정하며,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정책조정국에서 관장하던 협동조합 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의 명칭을 각각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조정 및 변경되는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14839 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산실 일부과의 예산편성 소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17.                      • 마감일자 : 2017. 9. 6.

- 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안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

-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계약자 보호 (안 제30조제3항제6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거래신고 및 계약금 입금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

### **3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8.                      • 마감일자 : 2017. 9. 27.

- (1)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안 제2조, 제3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기준 충족여부 검토·확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을 지정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안 제5조)

장애인 건강교육의 내용은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 유지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의료기관, 관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자 및 교육의 내용(안 제6조)

법에서 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등을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으로 추가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함

- (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시설의 지정기준 (안 제7조)

-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전문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갖춘 시설을 재활운동 및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동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6)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7)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재활의료기관을 3년마다 지정하며 복지부장관이 지정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의료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8)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신청자격, 시설, 인력 기준 및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1개소씩 지정하되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1개의 시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18.
- 마감일자 : 2017. 9. 27.

##### ○ (1)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안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으로 정함

#####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등(안 제3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 증진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조사연구,

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정함

(3)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일반차량 또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급차 등을 이용한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서비스 내용, 이용 절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관리가 필요한 자로 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장애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정함. 또한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을 하도록 함.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치의는 주치의 이용 등록 신청서에 장애인이 제출한 주치의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5)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로 하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4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18.
- 마감일자 : 2017. 9. 27.

○ 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각 50%씩 감면

나. 소액 도로점용료(1만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5천원 미만 → 1만원

미만)하여 소상공인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 **4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8. 18.                      • 마감일자 : 2017. 9. 27.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의 외부평가 재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2년 이내에 1회)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인 기준(2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음)으로 개정,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 평가 재 응시 기회를 확대(안 제20조의2 제4항) 하려는 것임